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 (국무원령 제447호)
(2013년 수정본)

【주 석】 2013년 5월 31일 국무원 제10차 상무회의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의 폐기와 수정에 관한 결정》(국무원령 제638호) 에 근거하여 수정하고 이를 수정 이후 버전으로 삼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는 2005년 8월 10일 국무원 제101차 상무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어 현재 공표되며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리 원자바오
2005년 8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이하 ‘상검법’이라 함)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이 중국 수출입상품의 검사작업을 주관한다.

국가질검총국이 성, 자치구, 직할시, 수출입상품의 항구, 집산지에 설립한 출입국검사검역국과 지사(이하 ‘출입국검사검역기구’라 함)는 책임지역의 수출입상품검사작업을 관리한다.

제3조 국가질검총국은 상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수출입상품의 리스트(이하 ‘리스트’라 함)를 제정하고 조정하며 실시할 것을 공표한다.

리스트는 최소한 실시일 30일 전에 공표되어야만 하며 긴급한 경우라도 실시일보다 늦게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질검총국이 리스트를 제정하고 조정할 때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처와 관세청 등 유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4조 수출입 검사검역기구는 리스트에 포함된 수출입상품과 법률과 행정법에서 반드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한 기타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이하 ‘법정검사’라 함)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법정검사 이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 국가의 규정에 따라 표본추출검사를 실시한다.

제5조 수출입약품의 품질검사, 계량기구의 계량치 검정, 보일러 압력용기의 안전감독검사, 선박(해상플랫폼, 주요 선박용 설비와 재료 포함)과 컨테이너의 규정검사, 비행기(비행기엔진, 기내설비 포함)의 비행조건검사, 핵승압 설비의 안전검사 등 항목은 관련 법과 행정법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 출입국 샘플, 선물, 일시적으로 출입국이 허용된 화물, 기타 비무역적 성격의 물품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법과 행정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리스트에 포함된 수출입상품이 국가에서 규정하는 검사면제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화인, 발송인, 생산기업이 신청하면 국가질검총국이 심사 후 승인해야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검사에서 면제된다.

검사면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관련 부처와 상의하여 제정한다.

제7조 법으로 검사가 규정된 수출입상품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상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상품검사작업의 실제 수요와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수출입상품검사방법의 기술규범과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수출입상품검사에서 참고하거나 근거로 하는 기술규범 및 표준, 검사방법에 대한 기술규범과 표준은 최소한 시행일 6개월 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라도 실시일보다 늦게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제8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대외무역상의 필요에 따라 수출입기업에 대해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합격평정절차에 따라 확정한 검사감독방식에 따라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9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실시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에는 안전, 위생, 보건, 환경보호, 사기방지 등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관련 품질, 수량, 중량 등 항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상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허가제를 실시하고 국가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증 관리를 실시한다. 서류를 조사하고 물품과 대조하여 서로 매칭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검증관리를 시행하는 수출입상품의 리스트는 국가질검총국이 관련부처와 상의 후 제정하고 조정한다 뒤 공표한다.

제11조 수출입상품의 수화인 또는 발송인은 자체적으로 검역신고 수속을 밟을 수 있으며 검역신고 대리 기업에게 검역수속을 위탁할 수 있다. 특급우편 방식으로 상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화인 또는 발송인은 출입국 특급우편 운영기업에게 검역수속을 위탁해야 한다.

제12조 수출입상품의 수화인 또는 발송인은 검역신고 수속을 할 때 반드시 법에 의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제13조 검역신고 대리기업은 수출입상품의 수화인 또는 발송인의 위탁을 받아 위탁인의 명의로 검역신고 수속을 진행할 때 반드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본 조례의 위탁인에 대한 여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탁인이 자신의 명의로 검역신고수속을 하는 경우 반드시 수화인 또는 발송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출입국 특급우편 운영기업이 수출입상품의 수화인 또는 발송인의 위탁을 받은 경우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검역신고수속을 진행하며 수화인 또는 발송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위탁인이 대리 검역신고기업, 출입국 특급우편 운영기업에게 검역신고수속을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대리 검역신고기업, 출입국 특급우편 운영기업에게 검사검역 위탁 사항에 대한 실제 정황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대리 검역신고기업, 출입국 특급우편 운영기업은 위탁인의 위탁을 받아 대신 검사검역 수속을 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인이 제공한 정황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4조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상품 위험예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출입상품 검사관련정보의 수집을 통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의 유형을 확정하여 상응하는 위험에 대해 예고조치와 빠른 대응을 취한다.

국가질검총국과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관련부처에 수출입상품 검사관련 정보를 즉각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 작업인원은 법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수입상품의 검사

제16조 법으로 검사하도록 정해진 수입상품의 수화인은 반드시 계약서, 영수증, 화물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빙과 관련 승인문건을 구비하고 세관 신고지의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검역신고를 한다. 세관에 통과된 후 20일 안에 수화인은 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검사를 신청한다. 법으로 검사하도록 정해진 수입상품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다.

수입할 때 검정관리를 시행하는 상품은 수화인이 세관 신고지의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신청하여 검증을 한다.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검증을 시행한다.

제17조 법으로 검사하도록 정해진 수입상품과 수입할 때 검정관리를 시행하는 상품은 세관이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화물통관신고서에 근거하여 통관수속을 처리한다.

제18조 법으로 검사하도록 정해진 수입상품은 수화인이 검역신고를 할 때 신고한 목적지에 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벌크상품, 쉽게 부패하거나 변질되는 상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이미 파손 또는 부족이 발생한 상품은 하역장에서 검사해야 한다.

위의 두 조항에서 규정하는 수입상품에 대해 국가질검총국은 대외무역과 수출입상품검사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도록 지정한다.

제19조 법률과 행정법 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는 수입상품이 신체와 재산상의 안전, 건강, 환경보호와 관계된 항목의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당사자에게 소각명령을 내리거나 반품처리 통지서를 발급하고 세관에 서면통지한다. 세관은 반품처리통지서에 따라 반품운송수속을 처리한다. 기타항목에서 불합격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적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재검사 결과 합격해야 비로소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 증명을 신청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즉시 증명해야 한다.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검사에 불합격한 수입 설비와 재료에 대해 설치사용금지통지서를 발급한다. 기술처리를 하여 수출입검사검역기구가 재검사를 하여 합격하면 설치와 사용이 가능해진다.

제20조 법으로 검사가 규정되지 않은 수입상품이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표본조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검증관리를 시행하는 수입상품이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검증결과 불합격한 경우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련 부처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한다.

법으로 검사가 규정되지 않은 수입상품의 수화인이 수입상품의 품질이 불합격이거나 파손 또는 부족이 있음을 발견하여 증명을 신청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 또는 기타 검역기구는 반드시 검사하여 즉각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21조 법정 검사범위에 속하는,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과 관계되고 가치가 높으며 기술적으로 복잡하며 기타 중요한 수입상품과 대형 플랜트는 대외무역 계약에서 약정한대로 제조를 감독하고 선적 전에 검사하거나 선적을 감독 한다. 수화인은 화물 도착 후 최종 검사와 배상의 권리를 갖는다.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필요에 따라 검사인원 또는 조직을 파견하여 제조를 감독하고 선적 전에 검사하거나 선적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국가는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의 해외공급업체, 중국 수화인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며 해외공급업체와 중국 수화인은 대외무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등록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는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에 대해 선적 전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수화인은 수입할 때 출입국 검사검역기구 또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선적전 검역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가 수입을 허가한 중고전기제품의 수화인은 대외무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서류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가치가 비교적 높고 신체와 재산의 안전, 건강, 환경보호 등의 항목과 관계된 고위험 수입 중고전기제품은 중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적 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화인은 수입할 때 반드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 또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선적전 검역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 국가가 수입을 허가한 중고전기제품이 입하된 이후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제23조 수입차량이 입하된 후 수화인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수입차량 검역증서와 관련 부처가 발급한 기타 증서에 의거하여 차량관리기관에서 운행허가증을 수령한다. 사용 중에 신체와 재산 안전과 관계된 품질결함이 발견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즉각 상응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제3장 수출상품의 검사

제24조 법으로 검사하도록 정해진 수출상품의 수화인은 반드시 국가질검총국이 일괄 규정한 장소에서 기한 내에 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과 관련 승인문건을 구비하고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검역신고를 한다. 법으로 검사하도록 정해진 수출상품의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불합격한 경우 수출을 금한다.

수출상품은 상품의 생산지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 국가질검총국은 대외무역과 수출입상품 검사작업의 필요에 따라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검증관리를 시행하는 수출상품의 발송인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검증을 신청해야만 한다.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의 규정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다.

제25조 상품생산지에서 검사하는 수출상품이 항구에서 면허를 갱신하여 수출해야 하는 경우 상품생산지의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규정에 따라 검사갱신증명서를 발급한다. 발송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검사갱신증명서와 필요한 증빙을 구비하여 항구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검사를 신청한다. 검사결과 합격한 경우 항구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화물 통관신고서를 발급한다.

제26조 법으로 검사하도록 정해진 수출상품과 검증관리를 시행하는 수출상품은 세관이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화물통관신고서에 의거 통관수속을 처리한다.

제27조 법으로 검사하도록 정해진 수출상품이 출입국 검사검역기구 또는 항구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조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적 처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재검사 결과 합격해야 수출할 수 있다. 기술적 처리를 할 수 없거나 기술적 처리 이후 재검사 결과 여전히 불합격한 경우 수출을 금지한다.

제28조 법으로 검사하도록 정해지지 않은 수출상품이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본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검증관리를 시행하는 수출상품이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결과 불합격한 경우 본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련 부처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제29조 위험성 있는 화물용 포장용기의 생산기업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포장용기 성능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포장용기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감정에 합격하여 성능감정증서를 획득한 경우 위험화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다.

위험화물을 수출하는 생산기업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위험화물 포장용기 사용에 관한 감정을 신청해야 한다. 감정을 하지 않았거나 감정 결과 불합격한 위험화물은 수출을 금한다.

제30조 쉽게 부패 또는 변질되는 식품과 냉동품을 담은 컨테이너, 선박, 비행기, 차량 등 운송도구에 선적한 계약운송업자, 선적업체, 대리인은 선적 전에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청결, 위생, 냉장, 견고함 등 적재검사를 신청한다.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선적을 금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31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대외무역 상의 필요에 따라 리스트에 포함된 수출상품에 대해 출고 전 품질감독관리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중 신체와 재산 안전, 건강과 연관된 주요 수출상품에 대해 수출상품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수출상품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상품은 반드시 등록되어야 수출할 수 있다.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출고 전 품질감독관리와 검사를 진행하는 내용에는 생산기업의 품질보증작업에 대한 감독조사 실시, 수출상품에 대한 출고 전 검사가 포함된다.

제32조 중국은 수출입식품 생산기업에 대해 위생등록관리를 실시한다. 위생등록을 획득한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수출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을 할 수 있다. 위생등록을 획득한 수출입식품 생산기업이 생산한 식품은 수입 또는 수출 할 수 있다.

위생등록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식품 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위생등록을 신청한다.

위생등록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위생등록을 신청한다.

수입식품 생산기업이 외국에 위생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이 조항의 3번째 문단에 근거하여 위생등록을 진행한 뒤 국가질검총국이 일괄 대외적으로 처리한다.

제33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필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수출입상품에 대해 상품검사표식을 부여하고 검사에 합격하고 기타 표기가 필요한 수출입상품에 표기를 부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제정한다.

제34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출입상품에 대한 샘플을 채취한다. 남은 샘플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관련 조직에 통지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돌려받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처리한다.

제35조 수출입상품의 검역신고자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도출한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도출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 또는 상급 출입국 검사검역기구 또는 국가질검총국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수리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 또는 국가질검총국은 반드시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재검사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한이 최대 30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제36조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수출입상품 검사작업의 필요에 따라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또는 해외의 검사기관을 지정해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위탁한 수출입상품검사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지정된 검사기관이 조사결과 규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설립된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기관은 관련 법과 행정법이 규정하는 등록자본, 기술능력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만 하며 국가질검총국과 관련 주무부처의 심사과 승인을 거쳐 허가를 받고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뒤 비로소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 검사기관의 검사감정업무활동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제39조 국가질검총국,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감독관리를 실시하거나 수출입상품검사의 법과 행정법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의 관련 계약서, 영수증, 장부,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제할 권한이 있다.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신체와 재산안전, 건강, 환경보호와 연관된 항목에서 불합격했다고 여겨지는 증거가 있는 수출입상품에 대해 본 기관의 책임자 승인을 거쳐 차압 또는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세관 감독화물은 예외로 한다.

제40조 국가질검총국,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대외무역상의 필요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입을 편리하게 한다.

수출입상품의 검역신고, 검사, 감정 등의 수속처리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자 데이터 서류의 형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제41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관련 법과 행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화물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 지역적 우대 원산지증명, 전용 원산지증명을 발급한다.

수출화물의 일반 원산지 증명의 발급은 관련 법과 행정법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2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보세구역, 수출가공구 등 세관 특별관리구역을 드나드는 화물과 국경지역에서 소액으로 거래되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관리는 국가질검총국이 관세청과 상의하여 별도의 방법을 제정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43조 검역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으로 검사 받도록 규정되었으나 미검사 상태로 수입상품을 마음대로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또는 반드시 수입 검증을 신청해야 하나 신청하지 않고 수입상품을 마음대로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불법 취득을 몰수하고 제품의 현금가치 5%이상에서 2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검역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으로 검사 받도록 규정되었으나 미검사 상태로 수출상품을 마음대로 수출한 경우 또는 반드시 수출검증을 신청해야 하나 미 신청상태로 수출상품을 마음대로 수출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불법 취득을 몰수하고 제품의 현금가치 5%이상에서 2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5조 법정 검사, 표본추출검사, 검증에 불합격한 수입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한 경우 또는 법정 검사, 표본추출검사, 검증에 불합격한 상품을 수출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판매, 사용, 수출 중단 명령을 내리고 불법 소득과 불법 판매, 사용, 수출한 제품을 몰수한다. 그리고 불법 판매, 사용, 수출한 상품의 현금가치 이상~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수출입상품의 수화인, 발송인, 대리검역신고기업, 출입국 특급운송운영기업, 검역신고인원이 수출입상품의 정황에 대해 사실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관련 증명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법정 검사의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역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입상품 검사를 회피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불법 취득을 몰수하고 제품의 현금가치 5%이상에서 2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출입상품의 수화인 또는 발송인이 대리검역신고기업, 출입국 특급운송 운영기업에 검역신고수속을 위탁하였으나 규정에 따라 대리검역신고기업, 출입국 특급운송 운영기업에게 검역신고사항에 대한 상황을 진실하게 제공하지 않은 채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관련 증명을 취득한 경우 위탁인에 대해 앞의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대리검역신고기업, 출입국 특급운송 운영기업, 검역신고인원이 위탁인이 제공한 정황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하지 않거나 근무 태만으로 인해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관련 증명을 속여서 취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대리검역신고기업, 출입국 특급운송 운영기업에게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검사증서/날인/표식/표기/화물통관신고서를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하였거나 위조, 변조, 매매 또는 절도한 검사증서/날인/표식/표기/화물통관신고서를 사용하여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취득을 몰수하며 제품의 현금가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채취한 샘플 또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합격한 수출입상품을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제품의 현금가치 10%이상에서 5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국가가 시행하는 수출상품 등록관리대상에 속하지만 등록을 획득하지 못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수출 중단을 명령하고 불법 취득을 몰수하며 제품의 현금가치 10%이상에서 5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국가가 시행한 위생등록관리에서 위생등록을 획득하지 못한 생산기업이 생산한 식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수입 또는 수출 중단을 명령하고 불법 취득을 몰수하며 제품의 현금가치 10%이상에서 5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위생등록을 획득한 수출입식품 생산기업이 조사결과 규정된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제한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시정했음에도 여전히 규정된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불법행위가 있다면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위생등록증서를 취소한다.

제51조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해외공급업체, 국내 수화인이 등록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선적 전에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반품을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등록을 취득한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고체폐기물의 해외공급업체와 국내 수화인이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등록을 말소한다.

수입국가가 수입을 허가한 중고 전기제품을 서류등록 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선적 전 검사하지 않은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품 처리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감정을 받지 않은 위험화물 포장용기를 제공 또는 사용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감정결과 불합격한 포장용기를 제공 또는 사용하여 위험화물을 선적하여 수출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적재능력을 검사하지 않은 컨테이너, 선박, 비행기, 차량 등 운송도구를 제공 또는 사용하여 부패 또는 변질하기 쉬운 식품, 냉동품을 수출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검사결과 불합격한 컨테이너, 선박, 비행기, 차량 등 운송도구를 제공 또는 사용하여 부패 또는 변질하기 쉬운 식품, 냉동품을 수출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부여한 상품검사표식, 표기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훼손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수출입상품 검사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사기관이 업무범위를 넘어서거나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감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6개월 안에 검사감정업무를 잠시 중단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국가질검총국이 검사감정 자격증서를 취소한다.

제56조 대리검역신고기업, 출입국 특급운송 운영기업이 국가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신고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가질검총국 또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6개월 안에 대리검역신고업무를 잠시 중단할 수 있다.

제57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 작업인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로 당사자를 난처하게 만든 경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행위를 하고 검사결과를 위조한 경우, 직무태만으로 검사증명을 연기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관련 법률과 행정법이 규정한 수출화물 원산지 증명 발급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고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8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몰수한 제품의 처리대금, 몰수한 불법소득, 납부한 벌금을 전부 국고에 상납한다.

제6장 부 칙

제59조 당사자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 국가질검총국이 도출한 재검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국가질검총국,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도출한 처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 행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록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도 하지 않은 경우 처벌결정을 한 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허가된 검사기관에서 검사검역업무를 처리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61조 본 조례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2년 10월 7일 국무원 승인, 1992년 10월 23일 기존에 국가 수출입상품검사국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는 동시에 폐기된다.